

제 1286 호
1986. 6. 5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영문권
편집인: 공보관 이상우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제	번호	개	상	공	보	관	공	보	관

시 보

차 례

- ◎ 공문시행
대한민국헌법령집제 97 최후록배부 2
- ◎ 고 시
제 370 호 : 주택개발재개발사업결정 3
제 375 호 :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시장) 지적승인 3
- ◎ 사 령
- ◎ 인사위원회출석통지

공 보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서 울 특 별 시

법무 02142-342 731-6156 1986.6.5

수신 수신처 참조 3년

지목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제 97 회 추록 배부

1.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제 97 회 추록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니 수령 즉시 기재정리하여 법령집 활용에 차질없도록 할것.

가. 배부기간 : '86. 6

나. 배부대상 : 대한민국 헌법법령집 보유부서

다. 배부장소 : 기법법

- 본청 : 법무담당관실에서 자과 분임물품·출납원 인장 날인 수령
- 구청 및 사업소 : 읍종배부

2. 대본 보유부서는 자체정리 상태를 점검하여 미정리된 추록을 제 97 회 추록과 함께 수령, 정리하여 법전판리에 철저히 할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서관 1, 서과 1-5, 9, 10, 16, 18, 21, 23-32, 34-37, 39, 43, 44, 46-50, 52, 53, 56, 59-65, 시구 1-17, 시보 1-7, 10, 13, 15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70 호

주택개발재개발사업결정

1. 건설부 고시제 469호(84.11.17)로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정된 옥수제7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2. 도시계획법 제5조, 동법령 제5호 동시제정법 제9호 도시계획법 제13조이 의거 하여와 같이 결정·변경할 결정을 함과 이를 고시한다.
3. 관계표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와 성동구청 장석화 외 1인에게서 신청한바에 의한다.

1986.6.5

서울특별시청

가. 내 역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옥수제 7구역 제 1 지구	성동구옥수동 2	16,254.745	
옥수제 7구역제 2 지구	성동구옥수동산 2-1	19,114.256	
계		65,369	

◎서울특별시고시제 375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시장)
지 적 승 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4(86.1.13)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24(86.5.21)호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시장)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문동 288-1번지의 외 1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사광을 원형도상여 명시하고자

-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령 제9호 동시제정법 제13조이 의거 하여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시장)을 지정·변경할 결정을 함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표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와 이문동 288-1번지 소유자 및 장석화외 1인에게서 의한다.

1986.6.5

서울특별시청

가.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시장)로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	비 고
건설	공용의 청사	동대문구이문동 288-1번지의 일부	7,749 ㎡ 중 142 ㎡	공용의 청사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신설	시장	동대문구계기동 1015번지의 1필지	1,302.48 m ²	건물연면적: 8,302 m ² (지하3층, 지상6층)중 시장연면적: 2,176 m ² (지하1층: 1,302.48 m ² , 지상 1층: 874.22 m ²)

나. 승인도면: 따로붙임(생략)

사 령

◎ 1986년 6월 5일자

령제 25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오종선	암사수원지사무소 근무	팔당수원지사무소	지방행정주사
구운희	"	동작구	지방전기기사
이성욱	"	연료과	지방화공기사
허계행	"	강남구	지방행정주사보
전혁기	"	성동구	지방기계기사보
엄규종	"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보
서상철	"	종합중합처리사업소	지방전기지원
유수현	"	꼭도수원지사무소	지방화공지원
김중환	"	동작구	기능직 (기계 7등급)
남궁대성	"	구의수원지사무소	" (전기 7등급)
엄용달	"	차량정비사업소	" (기계 8등급)
김장호	"	종합중합처리사업소	" (전기 8등급)
이천중	"	차량정비사업소	" (기계 9등급)
송해범	"	구의수원지사무소	" (전기 9등급)
심화석	연료과 근무	구로구	지방화공기사보

◎ 1986년 6월 4일자

령제 25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원길	복직을 명함	내무국	지방토목기사

성 명		발령사항	현 부 서	직 급
◎ 1986년 6월 5일자 령계 254호				
이 상 진	암사수원지사무소 예비군소대장	팔당수원지사무소	지방경찰직 6급상당	
유 문 상	암사수원지사무소	구의수원지사무소	지방경찰직 7급상당	
◎ 1986년 6월 3일자 령계 257호				
류 석 양	체육부 파견 ('86.6.4 - 11.10)	내 무 국	지방경찰사무관시보	
김 재 정	"	"	"	
서 울 특 별 시				
◎ 1986년 6월 1일자 령계 258호				
행정사무관시보	류 석 양	서울특별시 전기기과	경 투 1	
내무국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행정사무관시보	김 재 정	서울특별시 화공기과	상 공 1	
내무국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 1986년 6월 2일자 령계 259호				
서울특별시 농림기과	이 춘 회	서울특별시 토목기과	천 석 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서울특별시

◎ 1986년 6월 5일자		령 제 260 호	
성 명	발령부서	현부서	직 급
이준환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오석봉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1월간 감봉에 처함	주택개발과	지방건축기사보
권혁수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 1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	성 북 구	농림기사보
김근환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 1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	도 르 과	기계기사보
		령 제 261 호	
성 명	발령부서	현부서	직 급
이한범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	관악구 건축과장	지방건축기사
이원식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3월간 감봉에 처함.	은평구	지방토목기사
신삼수	관악구 근무를 명함. 불문 (경 고) 서울특별시 제 1인사위원회의결사항	종합건설본부	
		령 제 262 호	
성 명	발령부서	호 동	직 급
서봉호	중구보건소	1호 동	지방약사시보
정은주	동부병원	"	"
조순연	강남구보건소	"	"
김진	관악구보건소	"	"
원종미	용산구보건소	"	"
김경선	서대문병원	"	"

제 1268 호 시

보 1986. 6. 5. 8-7

성 명	발 행 부 서	호 봉	직 급
강 인 회	영등포병원	1 호 봉	지방간호원서보
임 경 회	은평구보건소	"	"
김 인 회	도봉구보건소	"	"
서 인 자	마포구보건소	"	"
신 태 양	서대문구보건소	"	"
채 효 숙	성동구보건소	"	"
박 암 욱	강남구보건소	"	"
양 해 길	동 부 병 원	"	"
유 미 진	서울대병원관리사무소	"	지방가족위생 연구사서보
손 승 현	중앙중말처리사업소	3 호 봉	지방화장기원보 사 보

◎ 1986년 6월 3일차 령 제 263 호

성 명	발령사한	원부서	직 급
이 승 규	지방행정서기에 추서함.	성 북 구	지방행정서기보

◎ 1986년 6월 1일차 령 제 264 호

성 명	발령부서	원부서	직 급
김 종 태	충청남도 아산군 전출을 명함.	도 봉 구	동원기원보

서울특별시장

소 속	직 명	성 명	사 망 일	사 망 이 유
강남구 방배 3 동	지방행정 서 기 보	황 정 회	'86. 5. 30.	분신자살

강 남 구 정 장

[별지 제 2 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성 명 적	김 병 연 (金 炳 淵)	소 속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직 명	지방건축가원
사 본 적	전남 고흥군 도화면 사대리 519		
항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85-6		
출 석 이 유	정 계 심 의		
출 석 일 시	1986 년 6 월 19 일 14 시 00 분		
출 석 장 소	시 청 기 궤 상 황 실		
유 의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시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86 년 6 월 5 일 서울특별시제 2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 하			